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75
----------	-------

발의연월일 : 2026. 4. 21.

발 의 자 : 신성범 · 박덕흠 · 박성훈
김예지 · 최수진 · 조은희
김선교 · 서천호 · 엄태영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

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의3).

법 률 제 호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제 6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본 문 및 같 은 조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 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14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및 같 은 조 제 3 항 중 “2026년 12월 31
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14 조 의 3 각 호 외 의 부 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
일”로 한다.

부 칙

이 법 은 2027년 1월 1일 부터 시 행 한 다.

[illegible]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략)

③ · ④ (생략)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